

업 무 홍 보

어선검사에 대한 질의 응답

한국어선협회

검사제도과장 이 화 우

[문] 어선의 검사일자는 어떻게 지정되고 있으며 어선검사 일자가 지정되면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만 어선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검사일자 이전이라도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늦추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 어선검사 일자의 지정은 어선법 제 16조, 동법 시행령 제 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는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되는 날에, 중간검사는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선령 15년 이상 어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지정하며 임시검사는 필요시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 날짜를 지정하며, 그 내용을 어선의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어선검사증서 뒷면과 어선검사수첩에 기록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의 소유자는 지정된 날짜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출어 등을 감안하여 검사지정일 이전에는 어선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어선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정된 검사일자를 넘기면 미수검 어선이 되어 소지하고 있는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며, 출입항이 통제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어선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도서·벽지서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형어선이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어선협회 사무실이 있는 항구로 반드시 회항하여야 하는지요?

기상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날자에 맞추어 회항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형어선이라 항해 위

험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동안 검사지에서 숙식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어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선협회 사무실이 없는 곳이라도 어선소유자가 거주하는 항·포구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어선법시행규칙 제 52조에 의하면 어선검사는 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검사집행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검사집행지 이외의 곳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집행지에 대하여 수산청고시 제 1호 ('82. 1. 15)로 고시되어 전국 주요 항·포구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부산항,” “울산항,” “주문진항,” “속초항,” “목포항,” “대전항,” “장항항,” “군산항,” “여수항,” “목포항,” “포항항,” “저동항,” “마산항,” “충무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제주항,” “서귀항” 등 19개 항에는 당 협회 지부, 출장소 및 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의 29개소는 경기도 “외포항,” 강원도 “거진항,” “삼척항,” “임원항,” 충청남도 “안흥항,” “남당항,” “백사장항,” “장고항,” 전북도 “하계항,” “곰소항,” 전남도 “거문항,” “녹동항,” “법성포항,” “하도항,” “예리항,” “전장포항,” “완도항,” “창유항,” 경북도 “강구항,” “구룡포항,” “감포항,” “후포항,” 경남도 “진해항,” “미조항,” 제주도 “한림항,” “성산항,” “추자항,” “모슬포항,” “세화항” 등 입니다.

당 협회에서는 어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무실 소재지에서는 언제든지 어선검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무실이 없는 29개소에 대하여도 다

음 표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원을 출장시켜 검사신청을 받고 있어 당 협회 사무실이 있는 항까지 회항할 필요가 없이 가까운 집행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검사일자가 일요일 등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검사일자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속 어촌계에 문의하시어 착

오 없으시길 바라며 상기 검사집행지 이외의 항·포구에 대하여도 당 협회 지부, 출장소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순회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협회 검사원이 있는 곳에서는 현지에서도 검사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어선소유자 여러분의 편리한 항·포구에서 언제든지 검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집행지별 검사일정표〉

지 부		집 행 지	검 사 일 자	접 수 장 소
인 천 지 부	강 원 지 부	외 포 항	매월 10~11일	수 협 외 포 리 출 장 소
		거 진 항	" 8~9일	거 진 어 촌 계
충 남 지 부		삼 척 항	" 10~11일	경 라 어 촌 계
		임 원 항	" 2~3일	임 원 어 촌 계
		남 당 항	" 10~11일	남 당 어 촌 계
		백 사 장 항	" 12~13일	수 협 안 면 지 소
전 북 지 부		장 고 항	" 15~16일	수 협 장 고 연 락 소
		하 제 항	" 7~8일	선 연 어 촌 계
		곰 소 항	" 13~14일	진 서 어 촌 계
전 남 지 부	목 포 출 장 소	거 문 항	" 22~23일	덕 촌 리 어 촌 계
		녹 동 항	" 8~9일	봉 암 어 촌 계
경 북 지 부		완 도 항	" 14~15일	완 도 수 협
		범 성 포 항	" 21~22일	범 성 포 어 촌 계
		하 도 항	" 7~8일	하 도 어 촌 계
		예 리 항	" 9~10일	예 리 어 촌 계
		전 장 포 항	" 23~24일	전 장 포 어 촌 계
		창 유 항	" 17~18일	창 유 어 촌 계
경 남 지 부	살 천 포 소	강 구 항	" 5~6일	강 구 어 촌 계
		구 룡 포 항	" 7~8일	구 룡 포 어 촌 계
		감 포 항	" 12~13일	감 포 어 촌 계
		후 포 항	" 10~11일	후 포 어 촌 계
제 주 지 부		진 해 항	" 5~6일	속 천 어 촌 계
		미 조 항	" 15~16일	남 해 군 수 협
제 주 지 부		세 화 항	" 2~3일	세 화 어 촌 계
		한 립 항	" 15~16일	한 립 어 촌 계
		성 산 항	" 17~18일	성 산 수 협
		추 자 항	" 23~24일	추 자 수 협
		모 슬 포 항	" 21~22일	수 협 모 슬 포 지 소

(충남 안홍항은 충남지부 서산분소에서 집행)

[문] 총톤수 10톤미만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어선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어떤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답] 어선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의 종류는

어선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어로설비, 구멍·소방·거주·위생설비 및 항해용구와 기타설비로 되어 있으며 그 비치 기준은 어선의 크기와 어업의 종

류에 따라 농수산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톤수 10톤미만 어선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를 선체, 기관, 안전설비 및 통신설비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째, 선체설비로서 선저의관 등 각종 구조부재가 양질의 선박용자재로서 견고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우수한 조종성능을 갖춘 조타기와 타를 비치하고, 선원이 쾌적하게 선상생활을 할 수 있는, 통풍이 잘 되고 조명이 밝은 거주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각종 선체의장품이 적재 적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관설비로서 전후진이 원활한 해상용 주기관을 비치하고 주기관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윤활유펌프 1대(주로 주기부착), 냉각펌프 1대(주로 주기부착), 공기압축기 1대(공기 시동식일 경우 한함), 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고 이들 상호간의 배관장치는 누유(수)가 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손이 없고 마모상태가 양호한 프로펠러와 주기로부터 연결된 중간축·프로펠러축을 갖추어야 하며 선내 조명과 통신설비 등의 작동을 위한 발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로 소형어선에는 밧데리로 이를 갈음함) 또한 기관설비에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내연기관, 급수장치, 프로펠러축계 등의 비품과 일반 비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중 주기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비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기관(주기)의 비품>

종 류	비 치 수 량
피 스톤 링	1실린더 분
배 기 벨 브	2 "
흡 기 벨 브	1 "
시 동 벨 브	1 개
연료분사벨브	기관 1대분
연료분사펌프	1 개
연료분사관	각 모양 및 치수별 1개
연접봉상하부	1연접봉 분
베 어 링 메 탈	
가스켓 및 패킹	각종 1실린더 분

셋째, 안전설비로서 이에는 구명설비와 소방설비 및 항해용구 등 주로 법정비품이 여기에 속하

며 구명설비는 최대탑재인원과 동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방설비는 포말소화기 1개 또는 간이식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 소화기의 2분의 1을 재충진할 수 있는 예비소화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항해용구 등 기타속구의 종류와 비치 수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 해 용 구 >

종 류	수 량	비 고
장 등	1 개	어선크기 또는 구조에 따라 수량 조정 가능
현 등	1 조	
선 박 등	1 개	
선 미 등	1 개	
정 박 등	1 개	
어 업 등	1 조	
시 계	1 개	
라 티 오	1 개	
나 침 의	1 개	
혹 구	3 개	
국 기	1 개	
무 중 호 각	1 개	
국제신호기	NC2기	
해 도	1 식	

넷째, 통신설비로서 무선전화(SSB) 1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설비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설비이어야 합니다.

[문] 어선의 소유자로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검사준비를 하고 검사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검사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누가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요?

[답] 어선법 시행규칙 제 42조에는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해당 검사별로 검사준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검사에 해당되는 검사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선체를 수면 밖으로 끌어 올릴 것.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어낼 것.

다. 선체에 붙은 해초, 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선체에 고착되지 않은 각종 물건을 정리·정돈할 것.

마. 선체 주요부의 뚜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을 개방하여 부품을 정리·정돈할 것.

나. 크랭크축과 암의 접합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소음기를 떼어낼 것.

라.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해체할 것.

마. 프로펠러를 떼어 내고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을 뽑아낼 것.

바. 각종 펌프류의 프런저 등 작동부를 빼어 내고 밸브 케이싱을 해체할 것.

3. 배수설비

가. 선외밸브(콰)를 해체할 것.

나. 킹스톤 밸브·로오즈 박스 등을 해체할 것.

4. 조타 계선 양묘설비 : 닻, 닻줄 등을 떼어 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5. 구멍, 소방, 항해용구 등의 설비 : 떼어 내어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6. 해상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이상과 같은 검사준비를 하고서 동 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 또는 기관장을 검사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선장 또는 기관장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대리로서 선박직원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때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한 직원이며 그중 통신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톤수 5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어선의 소유자를 검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검사 참여자가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사전에 검사준비를 완벽하게 함은 물론 검사에 참여하여 각종 설비의 성능 및 보완사항이 무엇인지를 확

인하여 안전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 어황이 좋지않아 어선을 매달아 두었는데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가 넘어 미수검 어선이라고 통보가 왔읍니다. 어떻게 하면 미수검 어선이 되지 않으며 미수검 어선에 대하여는 어떤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답] 당 협회에서 어선검사증서 뒷면과 어선점사수첩에는 차기에 받아야 할 검사의 종류와 시기를 기록하여 발급하고 있어 항시 어선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날짜가 경과되면 미수검 어선이 되며 미수검 어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는 것이며 만일 어황이 좋지 않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어선을 계류할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를 당협회에 제출하며 (계선계 제출로 가함) 계선기간동안은 어선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수검 어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장에서 조업중에 검사지정일이 도래되었을 경우, 성어기에 검사지정이 도래될 경우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조선소에 상가를 하고자 하거나 지역내 조선소의 상가시설의 부족으로 부득이 검사지정일을 넘길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을 5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어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5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선검사를 받지 않아 미수검 어선이 되면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어 출항을 할 수 없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을 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되면 어선법 제 2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 15조에 의하면 어업허가시에 “검사에 불합격되었을 시에는 조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어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되며, 같은 법 제 90조에서는 허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3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협회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도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여 어선의 등록을 관장하는 선적항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시·군은 이에 의하여 어선등록을 취소도 할 수 있어 어선검사는 반드시 제때에 어선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문]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입니다.

선적항은 인천이나 출어준비와 어획물의 위판, 어선의 수리등을 군산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선검사를 인천지부에서 받지 않고 전북지부에서도 어선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어선검사는 선적항에는 관계없이 어선이 있는 항 가까운 당 협회 지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협회에서 발급받는 검사기록부(검사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넣은 봉투로서 검사원 이외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회 검사실시 내용을 알 수 없어 부득이 선적항을 관장하는 지부에서만 검사집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어선검사기록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선검사를 편리한 곳, 어디에서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조업부진으로 인하여 계선계를 제출하고 항내에 계선하고 있을 동안에 지정된 임시·검사와 차기 중간검사 날자가 지나버렸습니다.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어선검사를 받아야 하겠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계선한 후 다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계선기간 동안에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서 검사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만일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면 기히 지정된 검사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정기검사만 받아 합격되면 되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계선기간중 지나간 검사중에서 상위검사만 받으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중간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

지 않아 중간검사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정기검사를 앞당겨 받을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리니 어선소유자의 편의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현재 조업중인 어업의 어황이 좋지 않아 어업허가를 변경하다보니 종전어업을 할때의 승선인원으로 도저히 조업을 할 수가 없어 승선인원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지요?

[답] 첫째, 어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의 거주설비가 승선인원이 증가되어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같은 종업제한이라면 별도의 종업제한 변경이나 개조발주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어업종류의 변화로 종업제한이 변경되거나 거주설비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개조발주허가를 시·군으로 부터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 협회에 임시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검사는 승선인원의 증원에 따른 이들의 거주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또한 증원분의 구명설비(구명동의 및 구명뗏목)를 갖추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이에 합격되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중 최대승선인원을 증원에 따라 변경 기재하여 발급하며 이 검사증서를 첨부하여 어업허가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문] 현재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구입하여 채낚기어선으로 설비를 변경코져 합니다.

어떤 절차와 검사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유자망어선을 채낚기어선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 시·군으로부터 어선법 제 5조에 의한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후 가까운 당 협회 지부, 출장소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검사준비로서는 채낚기어업에 꼭 필요한 집어등의 설치를 위한 발전설비와 이에 따른 배전기 및 진선포설에 따른 검사준비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낚기어업은 자동조장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타 업종보다는 많은 인원의 작업

인원(단순어부)을 승선 시키므로 거주설비의 증설이 필요하며 때때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총톤수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원된 인원내 대한 구명설비로서 구명등을 증원된 인원만큼 비치하여야 하며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증가된 인원을 포함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발전설비와 집어등의 증설로 인하여 배의 무게와 중심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복원성능이 변화되었으므로 복원성시험(경사시험) 준비도 하여야 합니다.

[문] 소구엔진을 주기관으로 거치하고 있는 어선인데 소구엔진을 들어내고 새로이 해상용엔진을 거치하고자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어선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시·군으로부터 기관대체에 따른 어선개조발주허가를 받아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실시하는 검사는 임시검사(개조에 따른 임시검사: 개조검사)입니다.

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대체하고자 하는 주기관은 필히 예비검사(어선에 거치하기 전 제작사에서 제작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엔진은 선체에 견고하게 거치하기 위한 엔진거더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중간축과 프로펠러축도 주기의 출력과 거치 위치에 따라 재설비되어야 하며 주기관의 냉각설비, 윤활설비, 시동설비 등 각종 보조기기 등도 새로이 거치하는 주기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구엔진과 새로 거치할 해상용 디젤기관은 기관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 국적증서(선적증서)를 재발급 받아 어선검사를 받고 있는 지부에 제출하여야 어선검사를 종결하게 되며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사항에는 기관의 종류와 출력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주기관의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증의 변경도 하여야 함을 점언합니다.

[문] 부산에서 어선을 구입하여 주소지로 회항을 하고자 하는데 이 어선이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어선검사증서등이 없어 출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검사를 받지 않아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까운 당 협회에서 어선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따라서 검사준비한 후 부산지부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에 합격되면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되며 따라서 출입항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때 선적항이 부산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을 이전하여 주소지 선적항 등록관청에서 새로이 국적증서(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지부에 제시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부득이 한 경우로서 부산지부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어선법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부에 임시항행을 위한 임시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산지부에서는 주소지까지 회항이 가능한가의 감항성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만 실시하고 이에 합격할 시에는 임시항행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 임시항행증은 주소지 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되므로 도착 즉시 해당 지부, 출장소에 어선검사 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수검어선이 되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 선내에 보관하고 있는 어선검사증서가 우천중 부주의로 인하여 어선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읽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어선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으로 인하여 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훼손된 검사증서를 첨부하여 당 협회 지부, 출장소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다음호에 계속)